

유럽 건축정책 동향과 시사점

김영현 부연구위원

요약

- 유럽의 건축정책은 1977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지난 20여 년간 37개 국가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건축기본법」 제정과 함께 지난 5년간 건축정책 추진
- 본고에서는 유럽 16개국에서 발표한 건축정책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건축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고,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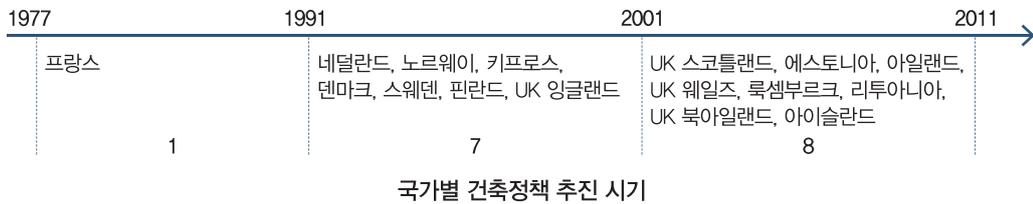
정책제안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86%가 국토부 단독주관 과제로 구성되어 제2차 계획에서는 타 부처 참여를 독려하고, 부처 간 협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유럽 다수의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건축정책 지원기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수 부처가 관계된 건축정책에 대한 중재·조정, 대규모 건축·도시 사업의 컨설팅, 국가 및 지역 건축정책 전반의 성과관리 등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명확한 역할 정립 필요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신규 건축관련 법령 및 계획간 관계 정립 필요
- 건축진흥원, 국가한옥센터, 공공건축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기구, 녹색건축센터 등 건축정책을 수행할 다양한 기구가 마련될 계획으로 이들 기구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목표 및 역할 정립,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할 것이 요구됨
- 계획된 정책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성과관리는 건축정책의 실행력 확보, 발전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절차로서 내실 있는 성과관리 체계 마련 요구 증대

1 유럽 건축정책의 추진 현황과 유형

■ 건축정책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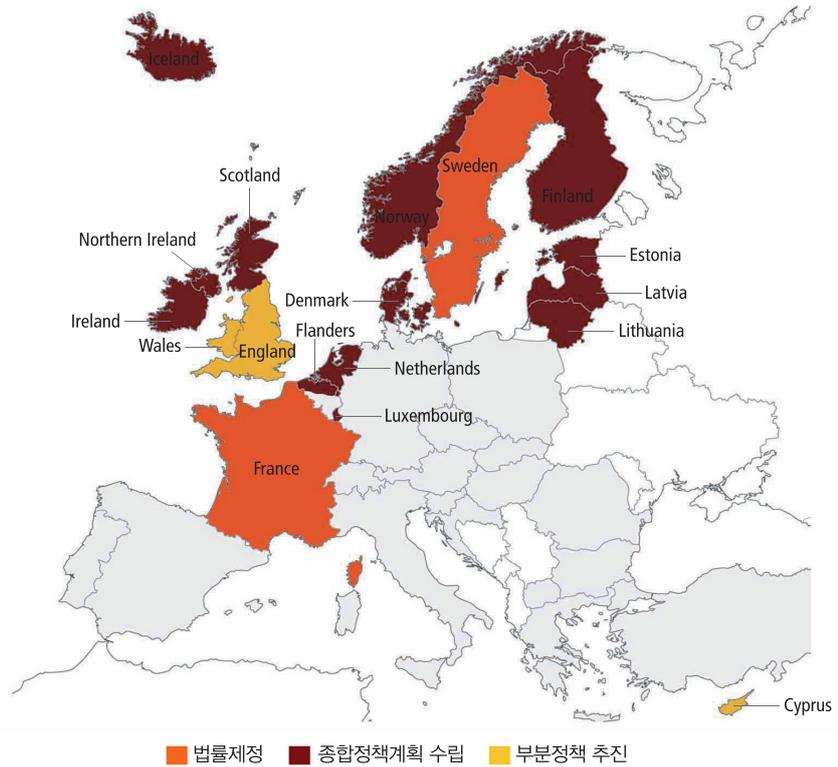
- 유럽건축정책포럼¹⁾(EFAP: European Forum for Architectural Policies)에 소속된 37 개 국가 중 핀란드, 프랑스, 영국 등 16개 국가가 건축정책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문서로서 법령 제정 또는 계획 수립



■ 건축정책의 3가지 유형

- 유럽건축정책포럼에서는 건축정책을 법률 제정에 의한 방식, 종합정책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부분정책으로 추진하는 방식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법률 제정을 통해 건축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는 프랑스와 스웨덴으로 건축의 공공성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해 강력한 규범인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 지원기구 또는 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
- 종합정책계획을 수립하는 유형은 유럽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12개국¹⁾이 채택하여 종합정책계획 수립
 - 1991년 최초로 네덜란드에서 종합정책계획 형식으로 국가차원의 공식계획 발표
 - 대부분 건축물과 공간환경,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비전,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전략계획 형태로 구성
 - 계획 수립주기는 국가별로 다르며, 통상 3~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계획내용에 대해 성과 관리
- 부분정책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국가차원에서 법률 또는 종합정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나 건축위원회 또는 전담지원 기구를 중심으로 건축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출판물을 발간하는 형태로서 영국, 키프로스 등이 있음

1) 유럽건축정책포럼(EFAP)은 1997년 네덜란드가 유럽연합 의장직을 맡고 있던 시기에 건축정책에 대한 국제회의를 시작으로 발의되었으며, 2001년부터 매 6개월마다 EU 의장국에서 유럽건축정책포럼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있음. 2011년에는 지난 3년간의 건축정책 추진실적을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하여 2012년도에 유럽건축정책에 대한 성과보고서 발간



국가별 건축정책 추진방식

출처 : European Forum for Architectural Policies(2011), "Survey on Architectural Policies in Europe", p.27.

■ 국내 건축정책의 추진방식

- 유럽건축정책포럼에서 구분한 3개 유형에 국내 건축정책의 추진방식을 비교하면 국내는 3개 유형 모두를 채택하여 활발히 건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
-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과 함께 최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어 건축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 국가차원에서의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 지역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다양한 정책 추진 중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은 총 3개 정책목표, 6대 추진전략, 18개 실천 과제, 113개 세부실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4년간 약 84개의 단위사업이 이행·완료되는 성과를 거둠(2013년 기준, 전체 사업 중 약 82.4%)
- 건축정책 지원기구로서 건축진흥원, 공공건축지원센터, 국가한옥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등 다양한 기구 설립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일부 기구는 이미 활발히 활동 중

2 유럽 건축정책의 주요내용

- 유럽 건축정책의 성과조사를 수행하는 유럽건축정책포럼은 건축정책 주요 프로그램으로 ①건축문화 인식 확산, ②공공건축 설계성능 기준 개선, ③지속가능한 건축 기술 확대 등 3개 부문으로 정리²⁾
- 유럽건축정책포럼에서 구분한 3개 부문을 토대로 덴마크,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등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새롭게 수립된 내용을 보완하여 정리

■ 건축문화 인식 확산 부문

- (건축문화 기구 지원) 건축정책 관련 기관, 센터, 재단, 박물관, 아카이브 등 건축문화기구를 설립하여 전시, 출판물 발간, 컨퍼런스, 토론회, 연구사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기획·추진
 - 핀란드 건축박물관, 네덜란드 건축협회(NAI), 아일랜드 건축재단(IAF), 벨기에 건축협회(VAi), 오스트리아 건축센터, 비엔나 건축센터 등
 - 기초지자체 단위에서의 소규모 건축센터도 다양하게 운영되어 영국은 20개 이상의 건축센터가 건축센터네트워크(ACN)에 의해 연계·운영되고, 프랑스는 32개, 네덜란드는 50개에 달하는 지역건축센터 운영 중
- (문화사업 지원) 건축시범사업 또는 전시회 등 혁신적인 문화사업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자금 지원
 - 벨기에,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에서 건축관련 사업을 비롯한 문화 프로그램 지원
 - 스코틀랜드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박물관 등의 리노베이션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국립박물관 리노베이션 사업으로 2007년 방문객 70만 명에서 2012년 190만 명으로 증가)
- (연구사업 지원) 건축과 디자인에 대한 연구사업 추진하는 관련분야 대학 및 연구기관, 부처 내 별도 연구기관 지원
 - 1994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건축기금(the Netherlands Architectural Fund)³⁾은 건축, 도시설계, 계획, 조경, 실내건축 분야의 정보교류 및 인식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운영(2009년 213개 연구사업에 한화 약 75억 원 지원)

2) 유럽건축정책포럼에서 2011년에 유럽연합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건축정책정책 집행실적 및 영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 유럽 건축정책 성과보고서 "Survey on Architectural Policies in Europe" 발표

3) 네덜란드 건축기금은 4개 정부부처인 교육·문화과학부, 주거부, 공간환경 계획부, 외교부의 예산을 지원 받아 운영되는 대표적인 국가문화기금의 하나임

-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건축, 도시설계, 문화유산 보존, 지속가능발전 등 폭넓은 범위에서의 포괄적인 주제를 담아 공간환경에 관한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발간
 - 영국 건축위원회 CABE에서 공공과 민간분야 발주자가 건축프로세스별 참고사항을 담은 매뉴얼 “Creating Excellent Buildings : a guide for clients” 발간
- (건축 시상제도)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건축 시상제도 운영
 - 프랑스 “Grand Public Prize of Architecture”는 주거, 업무, 공공건축, 공공공간부문에 구분된 시상제도로 일반대중이 직접 우수건축물을 선발하는 특징
 - 네덜란드 “Gouden Pyramid”는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커미셔너로서 우수한 역할을 수행한 공공건축 발주자에게 시상하는 제도 운영
- (기초건축교육 프로그램) 건축 및 공간환경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기초건축교육 프로그램을 초·중·고등학교 정규교과에 채택하여 운영
 - 영국은 건축교육 전담기구(Engaging Places)를 설립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각종 이벤트, 워크숍 등에 대한 교육정보를 일반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
- (전문가 학습 프로그램) 건축사, 도시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 관련 부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전문가교육을 의무적으로 추진
- (건축문화제 및 이벤트 기획·추진) 전시, 컨퍼런스, 길거리 축제, 보트투어, 디자인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로 유럽 전역에서 급속도로 확산
 - 공공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건축물 및 시설, 건축사사무소를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방문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오스트리아의 Architecture days, 영국의 Open House London, 아일랜드의 Open House Dublin 등

■ 공공건축 설계성능 기준 개선 부문

- (국가 건축정책 지원기구) 건축정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담 지원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공건축부문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 및 관련 연구지원 업무 수행
 - 프랑스 MIQCP, 영국 CABE, 웨일즈 건축지원기구(the Design Commission for Wales), 스코틀랜드 A+DS(the Architecture and Design Scotland), 벨기에 건축조직(Cellule Architecture), 아일랜드 건축정책위원회(GPAAC) 등
 - 각종 공공건축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발, 건축 관련법령 개정 지원, 현상설계경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공발주자 지원, 일반인 및 정책입안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역할 수행

- (지역 건축지원 기구) 지역차원에서 건축과 도시설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방정부 건축관련 공무원 및 발주자에게 기술적인 전문가 자문 수행 및 건축설계경기 운영 지원
 - 프랑스 지역건축지원기구 CAUE, 네덜란드 지역건축재단(the Architectuur Lokaal foundation) 등
- (국가건축가 제도) 공공부문의 디자인 품질 전반에 대해 정부에게 자문역할을 하는 국가건축가(State Architect)를 5년마다 지정·운영
 - 19세기 네덜란드에서 왕을 보좌하는 건축가(architect to the king)로 시작되었으며,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기획, 입찰과정 참여를 통한 건축가 선정 업무 수행
 - 최근에는 아일랜드(2009)와 헝가리(2010)에서도 국가건축가 제도를 도입·운영 중
- (지역건축가 제도) 지역 내 공공건축물, 기반시설, 조경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정책 지원을 하는 지역건축가(Regional Architect) 제도 운영
- (시정건축가 제도) 지방정부에 위촉된 독립적인 전문가로 해당 지역의 특정 건축업무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수행하며, 지방행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실증적인 자문 수행
- (디자인 공모제도) 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가장 성공적인 수단 중 하나로 건축설계공모의 실행을 강조
 - 프랑스에서는 1980년 이후부터 모든 공공건축물 신축 시 디자인 공모제도를 통해 설계를 선정하고 있으며, 매년 1,000회 이상의 공모가 프랑스 전역에서 이루어짐
 - 신진건축가 발굴·육성 측면에서 유로판(Europan) 국제건축설계경기를 2년마다 운영하여 40세 미만의 젊은 건축가를 대상으로 운영⁴⁾
- (신진건축가 지원) 공공발주 건축사업에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풍부한 젊은 건축가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및 장학금 수여제도 운영
 - 오스트리아는 교육·문화예술부 주관으로 신진건축가 대상 장학제도(TISCHE-Stipendien)를 운영하여 6개월간 해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건강 및 안전한 환경 조성) 건강과 웰빙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물리적 환경인 수준 높은 공원, 안전한 보행가로, 야외활동 증진을 위한 오픈스페이스 확대 등 주거단지 및 공공공간 조성 시 건강을 목적으로 한 가이드라인 개발·적용
 - 덴마크는 건물 내 습기 감소를 위해 건물과 자재의 최대 습기 수치가 시공문서에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규정

4) 2009년에 개최된 유로판에서는 총 22개 유럽국가, 2,500여명의 건축가 참여

- (창조적 장소만들기 시범사업) 지역문화 유산, 예술, 건축과 접목된 창조적인 장소 만들기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스코틀랜드는 외부 투자 및 방문객을 유치하고, 활기찬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문화 예술을 결합한 장소만들기 시범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 지속가능한 건축기술 확대 부문

- (해외 건축수출을 위한 여건 조성) 지식서비스, 디자인산업이 국가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국제 정세를 고려하여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 운영
 - 건축비엔날레 등 건축 및 건설기술을 홍보하는 국제 전시 기획, 외교부 주관으로 건축산업 홍보를 위한 캠페인 지원, 국제시장 교류확대를 위한 영문포털 제작 등
 - 덴마크는 해외 건축인력의 유연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job card'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건축분야를 외국인들의 취업 및 거주 허가가 가능한 고용분야로 지정
- (친환경 공공건축 시범사업)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패시브빌딩과 같은 에너지 절감 기술을 도입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우수사례 홍보
 - 대표사례로 오스트리아의 'Haus der Zukunft House Tomorrow'와 덴마크 시범사업 'Bolig+' 등
-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 유럽국가 대부분은 건물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외관 및 지붕교체, 창문, 보일러 등 에너지 개선요구를 대폭 강화
 - 덴마크 친환경건축물 스완라벨 빌딩제도(Swan-labelled building) 등
- (지역 도시계획에 저에너지 설계 유도) 덴마크는 저에너지 개발에 초점을 둔 국토계획법을 개정하여 지역 내 신개발단지에 저에너지 건축물을 유도하는 조항 추가
- (건축물 전생애주기 비용에 대한 고려 강화) 공공사업 입찰 시 건축물에 대한 연간 유지비용 산정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는 등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강조
- (첨단 시공기술 개발) 새로운 시공기술은 창의적인 건축설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시공기술에 대한 발전이 필수조건
 - 덴마크는 공공주택 및 공공건축사업 부분의 시공품질 제고를 위해 모든 사업프로세스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건축설계 신기술 및 디지털 툴에 대한 지식 보급 사업 추진
- (녹색건축 기술정보에 대한 웹사이트 개발) 녹색건축기술 및 사업, 관련 지침, 전문기업 및 인력정보 등에 대한 서비스 확대

■ 유럽 건축정책으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건축정책 상황

- 국내에서는 「건축기본법」 제정(2007) 및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 수립으로 유럽 주요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정책의 내용 대부분을 추진 중
- 다만 유럽의 건축정책이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시행됨에 따라 건축지원기구, 공공건축가 제도, 디자인공모제도 등의 정책이 이미 정착되어 현재 많은 우수 사례를 홍보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정책이 시작되는 시점임

유럽 건축정책과 국내 건축정책 추진상황

부문	주요 유럽 건축정책	대표사례	국내 정책 상황
건축문화 인식확산	1. 건축문화기구 지원	핀란드 건축박물관, 네덜란드 건축협회(NAI), 벨기에 건축협회(VAI), 오스트리아 건축센터, 비엔나 건축센터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라 건축진흥원 설립 근거 확보
	2. 문화사업 지원	벨기에,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문화사업 지원 사례	국토부 주관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으로 추진
	3. 연구사업 지원	네덜란드 건축기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녹색건축센터 지정 등
	4.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영국 CABE 발간물	경관조명, 수변경관, 해안경관 등 경관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5. 건축 시상제도 ⁵⁾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등	공공건축상, 신진건축사대상, 녹색건축대전, 한옥공모전 등 다양한 시상제도 마련
	6. 기초건축교육 프로그램	영국, 핀란드, 스코틀랜드, 노르웨이	국토부 주관 기초건축교육 교재 마련, 협회주관 건축 캠프 시행
	7. 전문가 학습 프로그램	크로아티아	-
	8. 건축문화제 및 이벤트	국제 로테르담 건축비엔날레,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영국 Open house London 등	건축문화제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수행
공공건축 설계성능 기준 개선	9. 국가 건축정책 지원기구	프랑스 MIQCP, 웨일즈 건축지원기구, 스코틀랜드 A+DS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설립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근거 확보
	10. 지역건축지원 기구	프랑스 CAUE	지역건축위원회는 지자체별 있으나 건축정책 측면에서의 역할 정립 및 기능확보 필요
	11. 국가건축가 제도	네덜란드, 아일랜드, 헝가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역할 정립 및 기능 강화 필요
	12. 지역건축가 제도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핀란드	서울, 경기 등 건축기본계획 수립 지자체에서 도입·운영
	13. 시정건축가 제도	네덜란드	기초지자체 단위의 영주, 포항 등에서 운영

5) 유럽건축정책포럼에서 우수사례로 홍보하고 있는 시상제도로는 'State Prize for Architecture(키프로스)', 'Grand National Prize for Architecture(프랑스)', 'Grand Public Prize of Architecture(프랑스)', 'Gouden Pyramid(네덜란드)', 'National Award for Dwelling Quality(스페인)', 'vladimir Nazor(크로아티아)', 'Building city, Living city(독일)', 'Grand Austrian National Prize for Architecture(오스트리아)', 'National Prize Architecture(오스트리아)', 'Architecture Best house Award(오스트리아)' 등이 있음

공공건축 설계성능 기준 개선	14. 디자인 공모제도	프랑스 MIQCP의 디자인공모절차 지원, 벨기에 Open Call, 유로판(European) 국제설계경기 등	공공건축지원센터 주요 역할로 설정되어 있으나 운영 예산, 인력 등 확보 필요
	15. 신진건축가 지원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신진건축가 대상 공공건축 디자인 공모 시범사업 추진 중
	16. 건축 및 안전한 환경 조성	덴마크, 아일랜드	-
	17. 창조적 장소만들기 시범사업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으로 추진 지자체 지역명소화 조성 시범사업
지속가능한 건축기술 확대	18. 해외 건축수출을 위한 여건 조성	덴마크 job card 프로그램	해외 건축수출을 위한 계획 수립
	19. 친환경 공공건축 시범사업	오스트리아 Haus der Zukunft House Tomorrow, 덴마크 Bolig+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 초에너지절약형 녹색청사 시범사업 등
	20.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	덴마크 스완라벨 빌딩제, 스페인 자발적 녹색인증제 등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녹색건축물 인증제 등 마련
	21. 지역 도시계획에 저에너지 설계 유도	덴마크	-
	22. 건축물 전생애주기 비용에 대한 고려 강화	덴마크	건축물 유지관리제도 도입
	23. 첨단 시공기술 개발	덴마크	BIM, BEMS 등 관련 협회 주관으로 추진
	24. 녹색건축 기술정보에 대한 웹사이트 개발	스코틀랜드, 덴마크	국토부 주관 그린투게더 웹사이트 개발

3 추진주체 및 관련기관의 역할

■ 건축정책에 참여하는 주요 부처

-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국가에서 건축정책에 참여하는 부처를 조사한 결과, 건축이 포함된 대부분의 부처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통적으로 외교부와 국방부가 포함
 - 덴마크는 건축 품질의 국제적 인식을 강화를 위해 외교부 공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 내 경관을 해치는 주요요소로서 국방시설도 건축정책의 범위에 포함
- 국내는 건축정책에 다양한 부처가 포함되어 있지만 여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외교부 등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
 - 임산부 및 노약자의 안전, 보육·육아시설 및 건강 측면에서의 건축·도시환경, 학교시설을 거점으로 한 커뮤니티 증진, 외교공간의 디자인 강화, 국방시설의 경관 고려 등의 건축정책은 상대적으로 해외 건축정책에 비해 부족한 실정

국가별 건축정책 참여 부처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한민국
문화부, 경제부, 사회부, 외교부, 환경·교통부, 에너지부, 자산관리청, 국방부	교육·문화·과학부, 주택 공간계획·환경부, 농업·자연·식품관리부, 교통·수자원관리부, 경제부, 외교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행정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지방정부·지역개발부, 문화·종교부, 교육부, 농림식품부, 환경부, 산업통상부, 석유에너지부, 교통·커뮤니케이션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철도관리청

■ 건축정책 담당부서

- 조사 대상 37개 국가 중 16개 국가가 건축정책에 대한 전담 부서가 존재하며, 그 외 21곳은 두 개 이상의 부서간의 공동 책임으로 운영
- 건축정책 전담 부서의 경우 대부분 건축정책 뿐만 아니라 다른 임무들과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부서 또는 도시개발·계획 관련 부서에서 담당

국가별 건축정책 전담 부서

국가	전담부서 성격				전담부서명
	문화 또는 교육부 소속	환경 또는 도시개발부 소속	건축 또는 주택관련 소속	기타	
벨기에(브뤼셀)				●	Architectural Cell
덴마크	●				Art and Education
에스토니아	●				Department of Arts
핀란드	●				Department for Cultural, Sport and Youth Policy
프랑스	●				General Direction of Heritage
독일		●			Protection of the Architectural Urban Heritage
헝가리				●	National Chief Architect's Office
아일랜드	●				The Department of Arts, Heritage and the Gaeltacht
이탈리아	●				Landscape, Fine Arts,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Art
리투아니아		●			Territorial Planning, Urban Development and Architecture
스페인			●		General Direction for Architecture and Housing
스웨덴	●				Division for Cultural Heritage
영국	●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스코틀랜드	●				Architecture and Place Division
북아일랜드	●				Department of Culture, Arts and Leisure
노르웨이	●				Departments for the Arts

4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사점

■ 건축정책 신생국가가 아닌 선도국가로 도약

- 유럽의 건축정책은 1977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지난 20여 년간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도 「건축기본법」 제정과 함께 지난 5년간 건축정책 추진
 - 유럽연합 EU회원국 37개국 중 현재까지 법률 및 정책계획을 수립한 국가는 16개국이며, 나머지 21개국은 정책계획 수립 준비 중
 - 국내는 국가차원에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건축기본계획도 활발히 추진되어 서울, 경기, 부산, 전북, 충남, 제주도 등 13개 지자체가 이미 계획수립을 완료하거나 현재 진행 중
- 유럽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은 국내에서도 지난 5년간 상당부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정책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임

■ 건축정책 관련부처의 확대 및 연계 강화 필요

- 앞선 시기에 건축정책을 도입한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국가는 다수의 부처가 건축정책에 참여하고, 부처가 협업을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을 설정
- 우리나라의 경우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 국토부, 문체부, 농림부, 환경부, 미래부 등 다수의 부처가 참여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86% 이상(113개 과제 중 16개 과제만 타 부처와 협력)이 국토부에 한정된 한계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도 당초 모든 중앙부처 장관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건축기본법 개정(2011.1.26.)으로 10개 부처 장관으로 축소
- 유럽은 외교공관, 국방시설 등에 대해서도 경관 및 디자인 측면에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타 부처의 참여를 독려하고, 부처 간 협력할 수 있는 기반마련 중요

■ 건축정책 전담 지원기구로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 강화 필요

- 「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2008년도에 건축정책에 대한 총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직속기구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4대강 수변공간 재생디자인 기본구상, 건축디자인기준 설정 및 시범사업 추진,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한옥 보급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 추진

- 건축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럽 다수의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건축정책 지원기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 다수 부처가 연관된 건축정책 사안에 대한 중재·조정, 국가차원의 대규모 건축·도시 사업의 컨설팅, 국가 및 지역의 건축정책 전반의 성과관리 등 위원회의 명확한 역할 정립과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신규 건축관련 법령 및 계획간 관계 정립 요구 증대

- 지난 5년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다수의 건축정책 법률 마련
 - 각 법률에 근거하여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관기본계획 등 다수의 정책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으며, 건축진흥원, 공공건축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건축정책을 수행할 다양한 기구도 마련될 계획
- 이와 관련하여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관련 법령 및 계획, 새롭게 설립되는 정책 지원기구 간 관계 정립이 우선 고려될 필요

■ 내실있는 건축정책 성과관리 체계 마련 필요

-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건축기본법」 제15조에 의해 매 2년마다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지역건축기본계획을 비롯한 새롭게 수립될 관련 계획의 성과관리 체계는 마련되지 못한 실정
- 계획수립 및 정책시행 자체도 중요하지만 계획된 정책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성과관리는 건축정책의 실행력 확보, 발전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절차로서 모니터링 주체, 이행·점검시점, 관리방식 등에 대한 내실있는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

김영현 부연구위원 (031-478-9619, yhkim@auri.re.kr)

